

제 1052 호
1984.12.17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영문판
공보관 조남호
전화 : 725-7661-9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25-6090

시보

차 례

- ◎ 조 례
제 1952 호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 ◎ 예 규
제 464 호 :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 (승인, 허가) 지침, 개정지침 14
- ◎ 고 시
제 758 호 : 마포로제 1구역 8지구재개발사업관리치분계획인가고시 27
제 75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32
제 760 호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34

< 이 면 계 속 >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761 호 : 도시계획 (광장, 도로)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34
제 762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결정.....	35
제 763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35
제 764 호 : 도심재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인가.....	36
제 765 호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	36
제 766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결정고시.....	37
제 767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허가.....	38
제 768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시행허가고시.....	38
제 76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39
제 770 호 : 도시계획사업 (사당 4 동어린이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변경.....	40
제 772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면적정정고시.....	41
제 773 호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인가.....	42
제 774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시행허가변경 (기간연장)	
제 775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42

㉞ 공 고

제 758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관계도면공람.....	43
제 759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46
제 760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완료공고.....	47
제 762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	47
제 764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48
제 766 호 : 도시계획사업 (공원) 실시계획공람공고.....	49
제 767 호 : 도시계획안공고.....	49
제 768 호 : 주택건설사업자등록폐업.....	50
제 770 호 : KS 표시품판매 및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50
제 771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행정처분.....	50
제 772 호 : 서울특별시판내 일부지역주차전용건축물전매율지정공고.....	51
제 773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관계도면공람.....	52

㉟ 구청공고

영등포구공고제 70 호 : 징계혐의자출석요구.....	52
-------------------------------	----

㊱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12.22.

서울특별시시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1952 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별

제 7 조제 1 항 및 법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 "시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법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 (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2 의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주차장개설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노상주차장에 주차한자가 소정의 요금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

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제 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측정제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할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되, 그 발견후 30분이 되기까지는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 분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 1 장의 발미에 제 3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의 2 (시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장이 시영주차장의 관리를 법제 8 조제 2 항 및 법제 1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또는 개인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p>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시간 측정제기에 의한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p>제 6 조 중 "폭"을 "너비"로, "장"을 "길이"로, "구획선"을 "주차구획선"으로 한다.</p> <p>제 7 조 제 1 항 중 "동법시행규칙 제 3 조의"를 "동법시행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노상주차장이 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주의사항 <p>제 8 조를 삭제한다.</p> <p>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10 조 (주차요금징수방법등) ① 법제 12 조제 1 항 또는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제 19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노외주차장의 용도로 전용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에 징수한다.</p>	<p>다만, 회수주차권 또는 정기주차권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수차권 또는 정기 주차권을 발행할때에 징수한다.</p> <p>② 제 1 항 단서의 경우에 노외주차장의 공용의 중지 또는 폐지등 당해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에 대한 요금환급시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권 : 회수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회수권에 대한 금액 2.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계산한 금액 <p>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11 조 (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표지의 규격은 법제 1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제 2 호서식과 같이 하되, 시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상단에 서울특별시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②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 7 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안내표지에 허가 또는 신고의 번호, 주차장의 명칭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 3 장에 제 11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p>
---	--

신설한다.

제 11 조의 2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제 12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하 "신고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다음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점용면적은 1천제곱미터미만을으로서 주차대수 40 대미만을 수용할 수 있을 것
2. 주거전용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 아닐 것
3.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당해 토지가 지목상 대지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을 것
4. 제 2 호 및 제 3 호이외의 지역에서는 당해토지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을 것.
5. 신고노외주차장입구 및 출구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는 4 미터이상일 것.

이 경우 그 입구 및 출구의 설치장소에 관하여는 영제 4 조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장소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가 여부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판단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법제 12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는 영제 3 조제 4 항에 규정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 2 항내지 제 4 항을 제 3 항내지 제 5 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 3 항(충전의 제 2 항)중 "법제 19 조제 3 항"을 "법제 19 조제 6 항"으로 하며, 동조제 4 항(충전의 제 3 항)본문중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 1 항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으로하고, 동항본문과 각호중 "%"를 각각 "퍼센트"로 하며, 동조제 5 항(충전의 제 4 항)중 "제 1 항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 1 항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는 영제 6 조 제 1 항 각호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 대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 대로 한다.

②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의 2 내지 제 12 조의 5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 조의 2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②법제 1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 미터이내로 한다.

②제 1 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등을 고려하여 24 제곱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동주차장은 본건물이 소멸될 때까지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2 조의 3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

및 설치비용의 납부절차등) ①법제 19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자는 영제 6 조의 3 제 1 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는 자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함으로써 주차장설치 의무가 증대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되는 부분의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자동차 진입로만이 제 1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 의무면제신청서를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할 때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법제 19 조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자는 영제 6 조의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 대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고 당해건축물준공과 동시에 별지제 3 호서식의 시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시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폐쇄될 경우에는 임시로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안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 4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시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 명 제 6 조의 5 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시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시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의 다음 날로 부터 제 1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른 회수주차권요금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 년이내로 한다.

제 12 조의 5 (조업주차장 설치기준) 법 제 19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조업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기준주차대수의 5 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조업타

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되, 그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 건축허가를 할때에 시장이 지정한다. 제 1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 조 (자동차의 진입로등) ①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농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횡단보도, 전보축, 육교아래, 교량, 터널
2. 너비 6미터미만인 도로. 다만 상면지역의 지역으로서 건축선을 1미터이상 후퇴하고 이면도로에 출구와 입구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교차로 또는 도로모퉁이에서 5미터이내
4. 국민학교, 유치원, 보육원, 양로원, 맹아학교 또는 정신박약아를 위한 시설 및 어린이공원 기타 어린이의 전용시설등의 출구 및 입구로 부터 20미터 이내

②전면도로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면도로중 자동차소통에 지장이 적은 도로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건축물부설주차장의 자동차진입로(지하도에 진입하는 경사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의 너비는 다음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부설주차장의 차도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4 조제 2 항제 3 호 나목의 기준에 의한다.

- 1.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너비 3.5 미터이상
- 2.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너비 5.5 미터이상 또는 너비 3.5 미터이상의 진입로 2 곳 이상

제 14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 조 (기존건축물을 위한 노상주차장특례)

①시장은 병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부설명령을 받은 기존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법정주차시설의 확보를 조건으로 도로여건 및 교통여건을 고려, 주차용의 도로점용을 허가하여 잠정적으로 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및 제 6 장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장 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

제 15 조 (세입)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의 세입을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 1. 제 9 조 제 1 항 및 제 3 항내지 제 5 항과 병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 2. 법 제 2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 3. 령 제 1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서 징수액의 10 퍼센트 해당금액.
- 4. 병제 19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납부금
- 5. 정부보조금
- 6.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 7. 기타 잡수입

제 16 조 (세출) 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 2.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제 17 조 (준용)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 18 조 (과징금처분) ①시장은 법제 2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당해노의주차장의 관리자 의 위반사실을 확인한후 시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10 일이내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 19 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 11 조의 2 및 제 11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신고노의주차장 신고처리
 2. 제 12 조의 3 규정에 의한 주차장

(별표 1)

시영주차장주치요금표

(제 2 조 제 1 항 관련)

구 분	1 회 주 차 권	회 수 권 계 (1 일)	노 의 정 기 주 차 권 (월)	
	1 구획 당 30 분 마다		주 간	야 간
1 급 지	500 원	6,000 원	75,000 원 (112,500 원)	56,000
2 급 지	200 원	2,400 원	30,000 원 (45,000 원)	22,500 원

()은 노상주차장 정기간

설치의무 면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3. 제 15 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및 징수

제 2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 3 조의 2 제 2 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설치조례는 (1980.11.24 개정) 폐지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한자에 대하여는 제 12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p>비 고 :</p> <p>1. 이 주차요금은 법제 7 조 제 1 항 및 법제 12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p> <p>2. 1구획은 보통 및 소형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p> <p>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p>	<p>주차난을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한다.</p> <p>4. 주차장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p> <p>가. 4월 - 10월 08:00-20:00</p> <p>나. 11월 - 3월 09:00-19:30</p> <p>5. 야간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별표 1 의 2)</p> <p><u>민영주차장 주차요금표</u></p> <p>(제 2 조 제 1 항 관련)</p>	

구 분	월 정 기 권		
	1 회 주차권 1 구획당 30 분마다	주 간	야 간
1 급 지	500 원	100,000 원	75,000 원
2 급 지	250 원	50,000 원	35,000 원

<p>비 고 :</p> <p>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 12 조 제 2 항 및 동법 제 19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p>	<p>2. 급지구분 및 주·야간의 시간구분은 별표 1 의 기준에 의한다.</p> <p>3. 기타 사항은 민영주차장 설치허가서 및 주차장개설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관리규정에 따른다.</p>
<p>(별표 2)</p> <p><u>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u></p> <p>(제 12 조 제 2 항 관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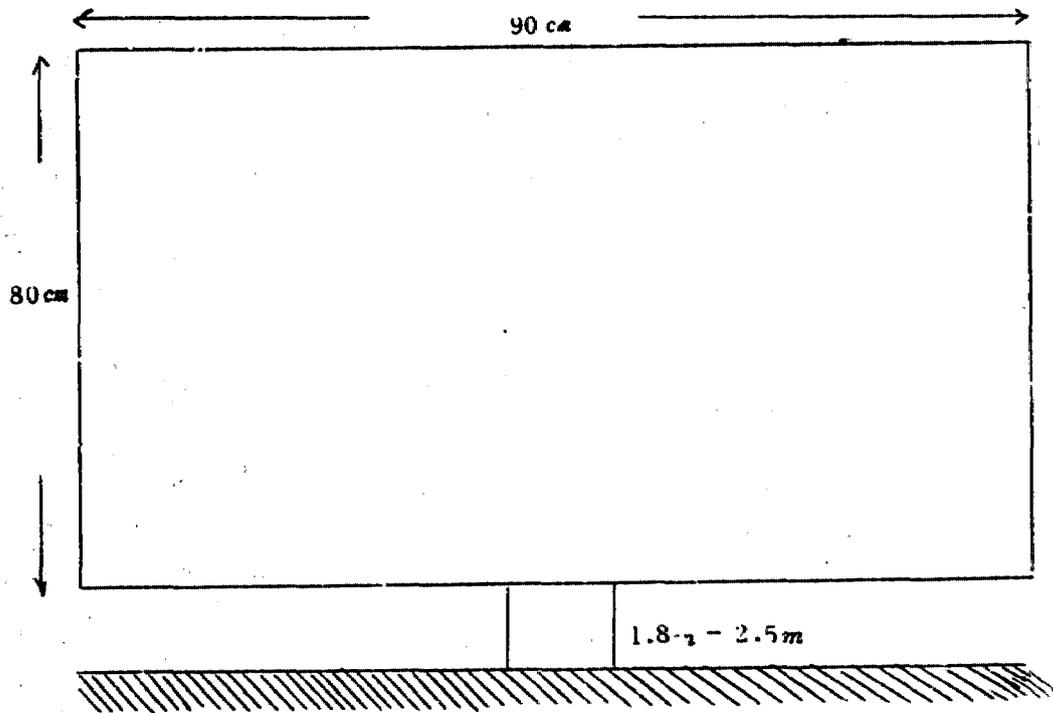
구 분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설치기준
예 식 장	건축물연면적 100 제곱미터마다 1 대 (제 12 조 제 4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주차면적을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탁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문수시설, 근린생활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건축물연면적 150 제곱미터마다 1 대

구 분	주차장정비지구안의설치기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상인 경우: 건축물연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물연면적 250제곱미터마다 1대. 다만 상업지역안에서는 200제곱미터마다 1대로 한다.
기 타 용 도	건축물연면적 250제곱미터마다 1대

(별지제 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제 7 조 제 2 항 관련)



구 분	재 료	색 색	
		바 탕	글씨 (고딕)
노상주차장	철 판	청 색	흰 색
시영노외주차장	·	·	·
민영노외주차장	·	흰 색	검정색

(별지제 2 호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 11 조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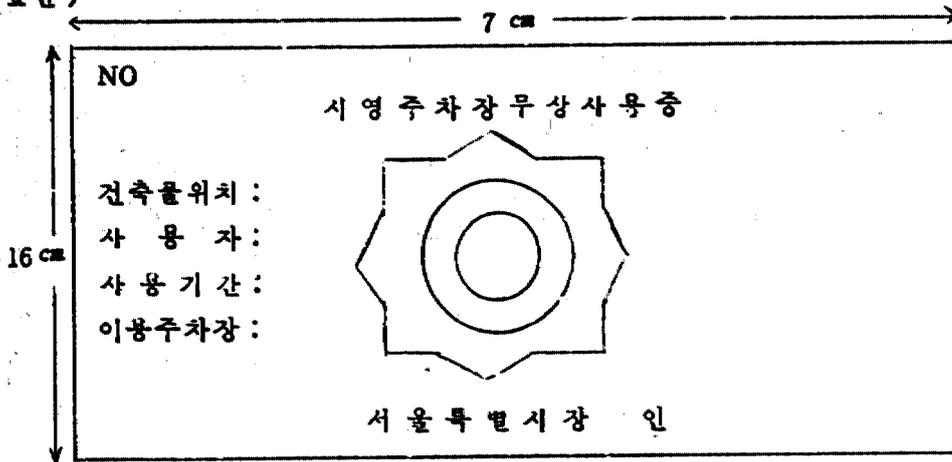


(별지제 3 호서식)

시영주차장무상사용증

(제 12 조의 3 계 4 항고나련)

(앞면)



비 고 : 바탕 - 하늘색

표시 - 흰색 (서울특별시 휘장)

글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이 시영주차장사용증은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것임.
2. 앞면표시중 건축물의위치, 사용기간, 이용주차장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3. 이 시영주차장사용증의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4. 이 주차장사용증은 지정된 주차장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예 규

◎ 서울특별시에규제 464 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승인, 복구)지침 개정지침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승인, 복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4.12.17

서울특별시장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관내 도로굴착에 관한 업무의 사전조정 및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도로굴착기간 조정 대상 및 기준) ① 도로의 굴착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각구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굴착조정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굴착기간 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조정대상 - 도로폭 20미터 이상 도로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아스팔트:연장 100미터 이상 굴착

나. 콘크리트, 보도부력:연장 500미터 이상 굴착

다. 기타 간선도로 횡단굴착으로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굴착

2. 소위원회 조정대상-제 1호 이외에 조정신청 기간내에 신청된 굴착

② 제 1 항 제 1 호 조정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특별한 사유로 도로 굴착 기간조정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공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하며 그 이외의 굴착신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조정한다.

- 1. 긴급공사 및 인원해소를 위한 공사등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2.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추가 사업분(사업변경포함) 또는 신청누락분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사

제 3 조 (굴착신청 기간공고) ① 시장은 매년 2회(6월, 12월) 15일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도로굴착 기간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 1. 신청대상
- 2. 신청기간
- 3. 구비서류
- 4. 접수처
- 5. 신청요령

제 4 조 (굴착기간조정신청처리) ① 신청인은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신청기간내에 별지 세 1호 서식에 의한 도로굴착기간조정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기간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은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5 조 (굴착기간 조정통보) ① 시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굴착방법 굴착기간등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구청장은 제 2조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소위원회의 심의조정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조정결과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2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굴착기간 조정, 통보 및 승인에 따른 처리절차등은 제 2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처리절차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뒷골목의 소규모 굴착(10미터 미만의 개인 건축등)은 구청장이 수시로 승인한다.

제 6 조 (굴착승인) 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조정통보된 기간내에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도로굴착 승인 신청서에 굴착작업계획서(별지 제 3 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로굴착 승인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 도로굴착 신청 현장조사서에 따라 현지조사후 굴착시기, 방법등이 타당하면 도로굴착복구비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청인이 복구비를 납부하였을때에 별지 제 5 호 서식의 도로굴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굴착승인 제한) ① 도로굴착기간 조정 및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이내 굴착
2. 도로굴착 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은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이내에 굴착
3. 우기(7-8월경)와 동절기(12-익월 2월경)의 굴착

② 도심지 간선 및 교통혼잡지역의 굴착은 야간작업을 원칙으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 8 조 (굴착복구 방법) ① 구청장이 굴착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하여 복구작업을 지시 또는 의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및 사리도

가. 구청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지침에 의거 직접 복구하거나

건설사업소장에게 복구 의뢰한다.

나. 건설사업소장은 직접 복구하거나 또는 단가계약된 건설업자에게 복구지시 한다.

2. 콘크리트 및 보도부러

가. 구청장은 직접 복구하거나 단가 계약된 건설업자에게 복구지시한다.

- 제9조(보고등) ① 구청장은 매월말 현재의 복구비 징수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굴착복구 상황판을 설치하여 굴착복구 상태를 수시과약 및 즉시복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부 회

이 예규는 1985.1.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호서식

도로굴착기간조정신청서

주 소
성 명 (기관명)

아래와 같이 도로를 굴착코자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굴착장소	굴착규모	복구비	굴착기간	굴착목적	시행기관	비고

첨부 : 1 위치약도 (1/25000 판내도에 표시) 2 부

19

신청인

①

구청장 귀하

제 2 호서식

도로굴착승인신청서

주 소 .

성 명 (기관명)

아래와 같이 도로를 굴착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장소				
굴착목적				
굴 착 구 모	포강별	연	강	굴착폭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부러 사 리 도			
굴착시기				

구비서류 1. 굴착신청서 1부

2. 위치약도 (1/5000 지적도에 표시) 4부

3. 굴착정면도 (굴착단면도 포함) 4부

※ 위치약도에 굴착작업시기 일정을 표시한 것

19

신청인

②

구 청 장 귀하

제 3 호서식

굴 착 작 업 계 획 서

주 소

성 명

다음 일정과 같이 굴착작업코자 작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9

신청인 ㉠

다 음

1. 굴착장소

2. 굴착목적

3. 굴착규모	아스팔트	m	콘크리트	m
	보도부력	m	사 리 도	m

4. 굴착시기 19 ~ 19

5. 굴착일별계획

번호	일자	작업시간	굴착구간	당일굴착연장	비 고

(첨부 1/500 지적도에 굴착일별계획도면 1부)

구 청 장 귀하

제 4 호서식

도로굴착신청현장조사서

명에 의하여 도로굴착신청승안에 따른 현장 조사한 바를 다음과 같이 부명합니다.

19

조사자 직명
성명

①

다 음

신청자	주소						
	성명						
굴착위치							
굴착목적							
굴 착 규 모	포장별	연장	굴착폭	면적	포장등급	복구비	포장시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부러						
	사리도						
	계						
굴착시기							
조사자의견							

- 첨부 1. 위치약도 (1/5000 지적도에 표시) 1부
- 2. 굴착명면도 (굴착단면도첨부) 1부

구 청 장 귀하

- 할도록 하고 하수구가 매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 도래주머니 등으로 보호조치할 것이며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등 잔재방지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돈 정비하여야 한다.
6. 굴착승인기간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승인은 자동무효가 되며 승인기간외의 굴착은 무단굴착으로 인정한다.
 7. 도심지 굴착작업은 야간을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승인 및 기타 특기사항을 공사 시·종점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 가설을타리는 포장면과 밀착시켜 차선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고 퇴색된 것은 선명하게 도색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9. 공사기간 중에는 칸막이, 인지책, 야간조명등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며 안전표지판은 시경교통과 (관할경찰서 교통계)와 사건의의 규격화된 다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포장복구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 울

- 가. 주의표지 (114, 112, 119 번)
- 나. 규제표지 (201, 225 번)
- 다. 안전표지
- 라. 야간위험표지 (100, 30 적색등 2미터 간격)
- 마. 위험개소표지 (스카치라이트반사테프가 첨부된 라바콘)을 설치할 것

제 6 호서식

굴착복구작업지시 (의뢰) 내역								
굴 착 내 역					복구지시 (의뢰) 내역			
위 치	포장종류	연 장	굴착일시	시행청	(부순돌체 석)기층공	안정처리 중공	표층공	기 타

위 치약도

서기 198 년도 세입도시재개발사업기금징수보고서

제 7 호 서식
서울특별시
세입과목 : (과)수탁사업수입(항)도로정비수탁수입(목)도로굴착복구비수입

구정

198 년 월분 지비수입보고서

확인자 :
작성자 :

년도별	부서별	굴착승인내용						부구비장수내용						비고	
		본월분			본월까지누계			조정세액		징수세액		관불액			수입미세액
		건수	연장	면적	건수	연장	면적	본월분	본월까지누계	본월분	본월까지누계	본월분	본월까지누계		
과 년 도 분	체신														
	한전														
	상수도(시비)														
	"(수탁)														
	하수도														
	도시가스														
	긴급누수														
	기타														
신 년 도 분	체신														
	한전														
	상수도(시비)														
	"(수탁)														
	하수도														
	도시가스														
	긴급누수														
	기타														
계	체신														
	한전														
	상수도(시비)														
	"(수탁)														
	하수도														
	도시가스														
	긴급누수														
	기타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758 호

마포로제 1 구역 8 지구 재개발사업관
라 처분 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287 호 ('84.5.17.)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마포로
제 1 구역 8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
여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법 제 4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40 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을 인가 하였기 이를 동법 제 1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4.12.1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명칭 : 마포로 제 1 구역 8 지
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 마포구 도화동 51-1 외
7 필지

다. 시행면적 : 2,545.04 m²

라. 시행자주소, 성명

(1) 주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
동 35-2

(2) 성명 : 성지건설(주) 대표이사
김 홍 식

마. 사업시행기간 : '84.5.17-'87.5.31

바. 사업 시행으로 새로이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1) 대 지 : 1,760.5 m²

(2) 건축시설 : 18,031.24 m²

(개 층 수 : 지상 16 층, 지하 4 층

(내 용 도 : 업무시설 (부속방도 :
판매시설)

사. 분양 : 해당사항 없음.

아. 분양대상자의주소 및 성명 : 해당
사항 없음.

자.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내지
또는 건물시설의 추산액과 중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의 가격 :
해당사항 없음.

차. 분양대상자의 중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1

카.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중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별첨 2

파. 법제 43 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격 및 처분방
법 : 해당사항 없음.

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 별첨 3

하. 참여조합원이 취득하게될 대지와
건축시설의 명세 및 참여 조합원
의 주소, 성명 : 해당사항 없음.

별첨 1.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가. 토 지

종 전 토 지 명 세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주 소	소유자명	지 번	지 목	원지적(㎡)	시행지적	권리종목	설정일자	채권최고액(원)	채 무 자	권 리 자	주 소
구로구고척동 97-3	김 회 중	마포구도화동 51-1	대지	113.7	113.7	근저당권	81. 4.15	16,000,000	김 회 중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10-1
남영아파트비동 105호											
영등포구여의도동 35-2	성지건설(주)	" 51-2	"	81	81	근저당권	84. 9. 7	750,000,000	성지건설(주)	한국의 환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181
"	"	" 51-3	"	987.8	987.8	자 상 권	84. 9. 7			"	"
"	"	" 51-3	"	987.8	987.8	근저당권	84. 9. 7	750,000,000	성지건설(주)	"	"
"	"	" 51-3	"	987.8	987.8	지 상 권	84. 9. 7			"	"
서울특별시		" 535-3	도로	656.3	578						
영등포구여의도동 35-2	성지건설(주)	" 292-7	대지	135.5	135.5	근저당권	84.11. 7	750,000,000	성지건설(주)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10-1
"	"	" 292-28	"	773	537.34	근저당권	84.11. 7	750,000,000	"	"	"
"	"	마포구마포동 348	"	145.5	111.7	근저당권	84.11.7	750,000,000	"	"	"

나. 건 축 물

종 전 건 축 물 명 세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주 소	소유자명	지 번	구 조	용도	면적(㎡)	권리종목	설정일자	채권최고액	채 무 자	권 리 자	주 소
	김 회 중	마포구도화동 51-1	철근콘크리트경	목욕탕	221.89	근저당권	81. 4.15	16,000,000	김 회 중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10-1
			육개및세넨트브								
			복조스래트층								
	성지건설(주)	마포구도화동 292-7	목 조 와	층 결 조	33.06	근저당권	84.11. "	750,000,000	성지건설(주)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
			목 조 와	층 주 택	42.98						
	"	" 292-28	철근콘크리트	"	332.89	근저당권	84.11. 7	750,000,000	성지건설(주)	"	"
			평 육 개								
	"	마포구마포동 348	목 조 와	층	72.73	근저당권	84.11. 7	750,000,000	성지건설(주)	"	"

별첨 2.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가. 명 세

종 전 토 지				종 전 건 물			소 유 자		평가금액	청산금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구조	용도	면적(m ²)	성명	주소	(원)	(원)	
마포구도화동	51-1	대지	113.7	철근콘크리트	목욕탕	221.89	김희중	구로구고척동97-3	193,793,350	193,793,350	
				경옥개릿샤넬브							
				특조스레트층							
마포구도화동	535-3	도로	578				서울시		453,152,000		

나. 청산방법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4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하여야 할 자는 동법 제 45조에 의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은 가격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본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행자가 지급하여 가청산하고 사업완료후 법 제 53조에 의거 청산한다. (단, 수용된 경우는 제외함)
- 국, 공유지 재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 82조 및 제 83조 2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청산에 가름한다.

167

제 1052 호
시

1984. 12. 17
54-31

별첨 3.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가.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1) 공 원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신 설	공 원	마포구도화동 292-28		537.34
		마포구도화동 292-7		56.2
2) 도 로 ○ 마포구도화동 292-7 : 135.5 m ² ○ 마포구도화동 348 : 111.7 m ² 나.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명세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소 유 자	평 가 액 (원)
마포구도화동 292-28	대 지	537.34	성 지 건설(주)	378,780,140
" 292-7	대 지	135.5	"	108,881,380
마포구마포동 348	대 지	111.7	"	48,508,540
계		784.54		536,170,660
다.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소 유 자	평 가 액 (원)
마포구도화동 535-3	도 로	578	서울특별시	453,152,000
◎서울특별시고시제 75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공고 제643호(84.10.26)로 공람공고한 강동구 풍납동 252-258 주변 포장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12.17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풍납동 252-228번지간 2. 사업 종유 및 명칭 : 풍납동 252-258 주변 포장공사 3. 사업시행규모 : 콘크리트포장 10.24m 하수도 D=600mm L=155m B=8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
일로 부터 1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풍납동 252-258 주변포장공사

주 소	지 적	면 적	면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성 명
풍납동 227-15	도 로	93	93	중구장충동 2 가 187-6	이 정 자
227-47	대	92	92	성내동 74-47	오 수 남
227-48	대	14	14	이천군대월면단원리 94	윤 회 원
227-49	대	11	11	"	"
227-21	도 로	79	34	종로구원남동 72-1	이 정 자
227-50	대	24	24	풍납동 227-20	신 원 보
227-51	도	42	42	" 227-9	강 성 구
227-22	도	33	33	" "	"
252-4	도	77	77	" 252-2	홍 재 남
252-13	잡	89	89	" 163-4	최 봉 준
252-6	전	500	500	강남구삼성 4 가 40-2	이진배외 1인
227-3	대	992	67	강남신사 920 나 - 1	김 두 연
227-6	전	69	3	"	"
227-40	전	17	17	성동구하왕십리동 811-1	남 문 옥
253-4	도	9	9	서울시	

지 장 발 조 서

주 소	지 장 물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성 명
풍납동 227-14	건물 부역	1,3	이천군대월면단원리 94	윤 회 원
227-8	회장실	1	"	"
227-20	건 물	4	풍납동 279-18	이 광 우
227-4	담 장	13	" 227-4	이 회 태
227-9	"	16	" 227-9	강 성 구
227-3	"	18	강남구신사동 920 나-1	김 두 연
227-20	담장 대문	7	풍납동 279-18	이 광 우
227-8	담 장	4	이천군대월면단원리 94	윤 회 원
227-14	"	2	"	"

◎ 서울특별시고시제 760 호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

- 1. 도시계획개발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동대문구청 주택과와 답십리 6구역 제 1지구 재개발조합에 비치한다.

1984.12.17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주택개량 재개발 답십리 6구역 제 1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1) 시행구역 : 동대문구 답십리동 464번지 일대

2) 면 적 : 7,366.8 평방미터

다.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동대문구 답십리동 464-117

라. 시행기간 : '84.12.17-'86.12.31

마. 시행인가일 : '84.12.17

바. 시행자 : 주택개량 재개발 답십리 6구역 제 1지구 재개발조합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 조

서 : 별첨 (생략)

아. 조합의 명칭 : 주택개량 재개발 답십리 6구역 제 1지구 재개발조합

◎ 서울특별시고시제 761 호

도시계획 (광장, 도로) 사업 실시 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3 호(83.3.30)로 도시계획 (광장, 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종묘앞 광장 및 도로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84.12.17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의 위치 : 서울 종로구 훈정동 100번지 일대 (종묘앞)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광장, 도로) 사업 종묘앞광장 및 도로공사

3) 사업의 규모

○ 광장 : B=149-154 m L=248 m A=346 ㉔

○ 도로 : B=18-45 m L=218 m A=46 ㉔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인가일로부터 84.12월말
- 변경 : 당초 인가일로부터 '85.12월말

- 6)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 없음
-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제 762 호

“주택개발재개발사업계획결정”

1. 건설부고시 제 470 호 ('73.12.1) 및 같은 고시 제 55 호 ('81.2.20) 로 구역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 295 호 ('81.8.10) 로 지적고시된 상계제 5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5조, 같은법 제 8 조, 같은법 시행령 제 56 조 및 제 58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계획을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와 도봉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12.18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나. 구역명 : 상계제 5구역

다. 면적 : 74,836 평방미터

라. 공공시설위치 및 규모 : 별첨 사업계획도서 (생략)

마. 건축계획

- 1) 주된용도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2) 건립형태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연립)
- 3) 건축율 : 50 % 이내
- 4) 용적율 : 300 % 이내
- 5) 최고높이 :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군 당국과 협의에 의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763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변경 결정및 지적승인고시

1. 서울시 고시 제 19 호 ('82.1.19) 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공용의 청사 (서울교, 지검청사) 부지중 기 고시된 면적과 실제세부 측량한 면적의 차이가 있어 기 고시된 면적과 부합되도록 면적 변정 없이 도면 (1/1200) 경계일부를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및 제 7조의 2 규정에 따라 고시한다.

<p>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 계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p>		<p>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12.18 서울특별시 장</p>		
<p>○ 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p>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공용의청사	강남구서초동산 185 일대	61,489	면적변경없이 도면(1/1200) 일부변경 변경 부분은 공원임
<p>○ 도면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764 호</p> <p>도심재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인가</p>		<p>• 변경 : '82.3.19-'85.5.31</p> <p>○ 변경사유 : I.M.F 연차총회 회의 장 시설제공준비에 따른 공사 지연</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5 호 ('82.3.19)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양동구역 제 6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 21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1984.12.18 서울특별시 장</p>		<p>◎ 서울특별시고시제 765 호</p> <p>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p>		
<p>가. 변경내용</p> <p>○ 사업시행기간 변경</p> <p>• 당초 : '82.3.19-'84.12.31</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81 호 (84.11.22) 로 결정 및 동고시 제 714 호 ('84.12.6)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소매시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 동법시행령 제 6 조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12.1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동작구 신대방동 361-6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대방소매시장

다.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동작구 신대방동 361-2

(주)벨엘기업 대표이사 서요한

라. 사업시행규모 : 대지면적 1,63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 준공예정일 : '85.10.30

바.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생략)

사. 위치도 및 평면도 :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766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결정고시”

1. 건설부 고시 제 470 호 ('73.12.

1) 및 같은 고시 제 55 호 ('81.2.

20) 로 구역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 295 호 ('81.8.10) 로 지적고시된 충청제 1구역 제 2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같은법 제 8 조, 같은법 시행령 56 조 및 58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계획을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중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12.18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나. 구역명 : 충청제 1구역 제 2 지구

다. 면적 : 총 75,586 평방미터 중 12,595 평방미터

라. 공공시설위치 및 규모 : 별첨 사업계획도서(생략)

마. 건축계획

1) 주된용도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 건립형태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

3) 건폐율 : 50 %

4) 용적율 : 300 %

바. 사업계획결정도서 :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767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36 호 ('83.3.15) 로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변경허가된 영등포구 신길동 225-8 외 2 필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변경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12.19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영등포구 신길동 255-8 외 2 필지
-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시장)사려가 쇼핑센터 증축공사
- 다. 사업규모 : 기존 2,230.43㎡ 증축 536.09㎡ 계 2,766.51㎡
- 라. 사업시행자 :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254-1 (주) 신영사려가 대표이사 남상우

마. 사업기간 : 1983.11.15 - 1984.12.2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소재지 및 지복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변경없음 (생략)
- 사. 토지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 변경없음 (생략)
- 아. 공사설계도면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768 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97 호 ('83.7.29) 로 시행허가된 도봉구 상계동 389-234 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장), 상계중앙시장 증축공사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변경시행 허가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12.19

서울특별시장

- 가. 도봉구상계동 389-234 번지
-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시장) 명칭 : 상계중앙시장증축공사
- 다. 사업의규모 및 면적 : 1) 대지면적 : 4,662㎡

2) 변경내역							
기 정				변 경			
지 총	1 층	2 층	연 면 적	지 총	1 층	2 층	연 면 적
681.5	493.0	660.5	1,835.0	238.0 (감)443.5	490.0 감 3	405.53 감 254.97	1,133.53 감 701.47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서울특별시도봉구상계동 389-234

성명: 상계중앙시장(주)
대표이사 김길환

마.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1) 착공일: 기정과 변경없음 (사업시행허가후 1개월이내)
- 2) 준공예정일: (기정) '84.7.30 (변경) '85.12.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
자의 권리명세 (생략)

가. 시설조서

◎서울특별시고시제 76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

1. 서울시고시 제 698('84.11.28) 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이틀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경구청 도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84. 12. 29

서울특별시장

번호	구분	등급	유별	폭 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1	신설	소로	2	8 m	60 m	구산 169-3	구산 172	
2	기정 변경	"	"	"	143	" 산 45-1	" 153-188	로선축소 50 m
3	기정 변경	"	"	"	410	" 산 57	" 산 45-1	로선축소 85 m
4	기정 변경	"	"	"	260	갈현 317	갈현 355	일부 T간 L = 90 m 위치변경

◎ 서울특별시고시제 770 호

도시계획사업 (사당 4 동 어린이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제 19 호 ('84.1.13) 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된 사당동산 32-53 의 3 필지 어린이공원 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제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어린이공원) 실시계획인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12. 19
서울특별시장

○ 토 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당초) 동작구사당 4 동산 32-53 의 3 필지

(변경) 동작구사당 4 동산 32-76 의 1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당 4 동 어린이공원조성

다. 사업의 면적

(당초) 15,819 ㎡

(변경) 1,503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동작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준공 예정년월일

○ 착수 : 1984. 3

○ 준공 : 1986.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고시면적 (㎡)	사용할또는수용할토지면적 (㎡)	소유자주소	성명	비고
당초 1	동작구 사당동	산 32-53	임야	12,474	12,474	성동구의 252-16	이경호	
2	"	산 32-73	"	285	304	(주)제일건축	"	산 32-68 분할 면적증
3	"	산 32-72	"	806	806	"	"	
4	"	산 44-18	"	235	2,235	"	"	
계				15,800	15,819			
변경 1	동작구 사당동	산 32-76	"	936	936	성동구의 256-16	이경호	
2	"	산 44-24	"	567	567	(주)제일건축	"	
3	"	"	"	1,503	1,503	"	"	

오 전 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고시면적	사용또는수용할 건물면적 (㎡)	소유자주소	성명	비 고	
당초 1	동작구 사당동	산 32-53	임야		58	사당동산 32-53	이간년		
변경 1	동작구 사당동	산 32-76	"		58	사당동산 32-76	"		
<p>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 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p> <p>◎서울특별시고시제 772 호</p> <p>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면적정정고시</p> <p>1. 건설부 고시 제 155 호 ('82.4. 26) 로 구역변경 지정되고 서울 가. 정정내역</p>					<p>특별시고시 제 331 호 ('83.7.4) 로 구역면적 정정한바 있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현저 제 3 구역에 대하여</p> <p>2. 도시재개발법 제 4 조와 동법시행 령 제 58 조 제 1 항 1 호 규정에 의 하여 동 구역면적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12. 19</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정주전	정정후			
현저제 3 구역		종로구 현저동 7-46 일대			105,704	141,474			
<p>나. 위치도면 : 별첨 (생략)</p> <p>◎서울특별시고시제 773 호</p> <p>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인가</p> <p>1.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 재 개발 신당제 1 구역 (일부) 의 조 합설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 16</p>					<p>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주택개량과 및 중구청 주택과와 신당제 1 구역 재개발조합에 비치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12. 19</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가. 인가내용

- (1) 명 칭 : 신당제 1구역 재개발 조합
- (2) 시행구역 : 중구신당동 57 번지 일대
- (3) 면 적 : 36,946.0㎡
- (4) 주된사무소 소재지 : 중구신당 6 동 41-52 호
- (5) 조합원수 : 387 명
- (6) 정 관 : 별 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774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행허가변경 (기간연장)

- 1. 서울특별시고시제 55 호 ('73.4.24) 로 사업시행 허가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허가 (기간연장) 하였기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12.2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가리북동 49호

4 일대

- 나. 명 칭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 다. 사업시행자 :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김 기 배
- 라. 면 적 : 366,230 평
- 마. 사업기간 : 당초 : 73. 4.30~84.12.31. 변경 : 73. 4.30~85.12.31.

◎ 서울특별시고시제 775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 1. 건설부고시제 145 호 ('74.5.13) 로 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213 호 ('76.9.4) 로 사업시행인가 (변경) 된바 있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현제제 3 구역에 대하여
- 2. 도시재개발법제 5 조, 동법제 6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6 조, 동 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3.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 과 우리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12.2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명칭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나. 구 역 명 : 현저계 3구역
 다. 면 적 : 당초 151,524㎡
 변경 141,474㎡
 라. 사업계획변경결정도서 : 별첨 (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758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제 6조 및 제 13 조에 의
 거 성동구청인가(허가)주택 452-
 9488('84.5.11 제 2 호)토목 416-
 7548('84.4.23)토목 416-10682('84.
 5.21) 토목 416-13961('84.6.18) 토

목 416-15927('84.6.30) 호로 공공
 하수도 설치인가(공공하수도허가)
 한 공공하수도 설치가 완료 되었
 기 하수도법제 9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
 략 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공고로
 갈음한다.

1984.12.18

서울특별시장

공 고 및 공 략 개 요

위 치	사용개시 년 월 일	배수구역	합류식도는 분 류 식	공 사 개 요	인가(허가) 사 항
계 43 건 자양동 503-1	84. 4.25.	구의 배수분구	합 류 식	흡관(Φ 600) 60 m	토목 416-7548 ('84. 4.23)
성수 2 가 230- 7 의 7 필지	84.8.21.	성수(1) 배수분구	합 류 식	흡관(Φ450-600) 267 m	주택 452-9488 ('84.5.11제 2호)
성수 2 가 309- 50 의 2 필지	84.8.21.	"	"	흡관(Φ 450) 169 m	토목 416-13961 ('84. 6.18)
자양 1 동 466- 6,7,8	84. 8. 4.	구의 배수분구	"	흡관(Φ600) 88.5 m	토목 416-15927 ('84. 6.30)

위 치	사용개시 년 월 일	배수구역	합류식또는 분 류 식	공사 개요	인가(허가) 사 항
송정동 63- 능동 132 간	84.10.15	화양, 군자 배수분구	합 류 식	흡관(Φ300-900) 1,132 m	인 가
마장동 220- 767 간	84. 7. 5	마장	"	흡관(Φ600) 372.5 m	"
성수 2-1 동	84.5.30.	성수 (1)	"	흡관(Φ600) 253 m	"
성수 2-1 동 331 주변	84. 5.30	"	"	U형측구 (34×50)cm 85.5m	"
옥수동 542- 541 간	84.7.26	금호 배수분구	"	U형측구 (30×45)cm 115 m	"
행당2 동금일경 노당- 324 간	84.6.26	금호행당	"	U형측구 (30×45)cm 139m 흡관(Φ450) 7.5m	"
성수 2-2 동236- 29-236-85 간	84. 6.30	성수(2)	"	흡관(Φ450-600) 142.5m	"
성수 2-2동 48- 5-49-325 간	84. 6.30	"	"	흡관(Φ450) 216 m	"
성수 2-3 동 302 주변	84. 6.30	성수 (1)	"	흡관(Φ450) 210 m	"
성수 2-3 동236- 29-236-35 간	84. 6.30	성수 (2)	"	흡관(Φ450) 70 m	"
성수 2-2동 236- 110-236-109 간	84. 6.30	"	"	흡관(Φ450) 62.5 m	"
군자동 27-3- 27-8 간	84. 7.16	군 자 배수분구	"	흡관(Φ450) 175 m	"
군자동 58-39간	84.7.16	"	"	흡관(Φ450) 60 m	"
송정동 67 주변 지주변	84.7.20	화 양	"	흡관(Φ450) 225 m	"

사 령

◎ 1984년 12월 17일자

령제 470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노종식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4.9.20자 감봉 3월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함	청소과위생시설계장	지방화공기좌

◎ 1984년 12월 17일자

령제 471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용덕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대문구보검소	지방의무기점

◎ 1984년 12월 18일자

령제 472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덕준	부직을 병함	내부국 문화과	지방행정주사보

◎ 1984년 12월 20일자

령제 473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홍승용	지방별정직 7급상당(기계처리사)에 임함 전자계산소 근무를 병함	전자계산소	지방별정직 8급상당

위 치	사용개시 년 월 일	배수구역	합류식또는 분 류 식	공사개요	인가(허가) 사 항
구의동 201-200 - 2간(구의천복개)	84. 8. 14	쌍 장 배수분구	합 류 식	암거(3.25×2.08) 208 m	인 가
능동 92-44- 92-56 간	84. 7. 13	군 자	"	흡관(Φ450) 130 m	"
하왕 1 동 549 번지주변	84. 7. 9	마 장	"	흡관(Φ600) 70 m	"
하왕 1 동 286- 232 간	84. 6. 2.	"	"	흡관(Φ600) 135 m	"
옥정중학교 진입로	84. 7. 30	옥 수	"	흡관(Φ450) 297.5 m	"
옥정국민 학교 진입로	84. 7. 30	"	"	흡관(Φ450-800) 242.5 m	"
금호 1 가 168- 하왕 2 동 1000 간	84. 9. 12	행당, 금호	"	흡관(Φ450-700) 696.5 m	"
구의동 123-10- 123-7 간	84. 7. 19.	구 의	"	흡관(Φ300-450) 90 m	"
중곡 4 동 18- 5-18-32 간	84. 7. 19	중 곡	"	흡관(Φ450) 125 cm	"
사근동진입로 개설	84. 5. 31	마 장	"	흡관(Φ450-900) 1,415 m	"
건대후문개거복개 (화양 97)	84. 3. 17	성수(2)	"	암거(4.8×1.2) 87 m	"

5.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도면):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759 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
가탈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1984.12.18

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의

서울특별시장

○ 취소내용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번호	제조구분	제조품목	취소사유
삼흥모타 공업사	강서구신림동 595-5	정동철	1-6-28	소형교류 전동기류	콘덴서가동 유도전동기 농형 3상 유도전동기	전기용품안전관리 법제 7조 1항위반

◎서울특별시공고제 760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68호(81.3.11) 및 동고시 제 311호(82.8.10) 동고시 제 147호(84.3.24) 동고시 제 569호(84.9.21)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및 변경시행허가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91-11번지의 21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조의 2 및 동법 제 85조와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12.1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산 191-11 외 21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
(성보중고등학교 교지정지공사)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설명: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2-35 학교법인 성보학원 이사장 윤장섭

라. 사업시행면적: 56,496.8㎡

마. 사업시행기간: 1981.3.11~1984.12.

바. 완료관계도서: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762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영업정처분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를 행정처분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4.12.19.
서울특별시장

다 음						
일련 번호	지정 번호	상 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 반 내역	조치내역
1	영등포구청 86 호	대양기업사	이영일	양평동 2가 29-32	무단장소이전	지정취소
2	영등포구청 88 호	영 화 사	이강운	양평동 3가 75	"	"
3	영등포구청 97 호	(주)고구려	전남연	영등포동 28-156	"	"
4	영등포구청 73 호	무주기업(주)	황종욱	여의도동 43-3	1. 기술자미채용 2. 휴지신고미이행	시공정지 2개월

◎서울특별시공고제 764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 아래와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
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

사. 사업개요

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2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공람공고한다.

1984.12.19.

서울특별시장

구 분	사업명	정릉 1 동 16 번지 주변 도로 개설
사업시행지	사업시행지	●정릉 1 동 16-12 호
사업규모	사업규모	도로개설 B = 6 m L = 210 m 하수도 D = 600% L = 210 m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일자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일자	서고 105 (83. 2. 14) 서고 210 (83. 4. 12)

나. 사업의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장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 및 건물주소

<p>라. 위치및계획면도 : 별첨 (도면생략) 마. 확공및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와 동시 - '85.11.30 바. 토지및 지장전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사. 토지 (건물) 조서 및 도면은 성북구청 주택과 (94-4851) 및 건설관리과 (95-8470) 로 문의하기 바랍니다.</p> <p>◎서울특별시공고제 766호 도시계획사업 (공원) 실시계획공람공고</p>	<p>1. 도시계획사업 (공원) 실시계획에 따른 서류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2항에 의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내에 제출바람 (전화 : 445-7055)</p> <p style="text-align: right;">1984.12.20. 서울특별시장</p>
---	---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및사업명칭	면적	사업기간	공람기간
성동구능동 18번시일대	도시계획사업 (공원) 실시 계획공원후문주차장신설	7,652㎡	85. 1. 30~ 85.10.30	84.12.21~ 85. 1. 3

<p>◎서울특별시공고제 767호 도시계획안공고</p> <p>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계동 684-3번지의 6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 2 규정에 의거 서울</p> <p>다. 개 요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결정내용</p>	<p>특별시 도시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때는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가. 공람기간 : '84.12.23 ~ '85.1.5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정비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위치</th> <th>결정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여객자동차정류장</td> <td>상계동684-3번지의 6필지</td> <td>4,946㎡</td> <td>신설</td> </tr> </tbody> </table>	구분	위치	결정내용	비고	여객자동차정류장	상계동684-3번지의 6필지	4,946㎡	신설	<p style="text-align: right;">1984.12. 서울특별시장</p>
구분	위치	결정내용	비고						
여객자동차정류장	상계동684-3번지의 6필지	4,946㎡	신설						

◎서울특별시공고제 768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폐업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이 폐업되었기 공고한다.
 1984.12.19.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비 고
83-172	(주)무림건축	양 호 천	성동구능동 97-7	주택건설	폐업

◎서울특별시공고제 770호
 KS표시품판매 및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규정에 따라
 KS표시품판매 및 표시 정지처분한
 바 있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
 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4.12.21
 서울특별시장

업 체 명	소 재 지	규격번호	품 목 명	종 류 등 급	처분내용	처분일자	해제일자
조일수은등 공업 (주)	서울성동구성수 1가13-157	KSC 8104	그림수은램 프용안정기	고역율 220V/300W	표시정지	84. 9.21	84. 12.21
대한중기 공업 (주)	서울구로구 신도림동446	KSP 4002	광산지보용 1형	2중 100mm 130mm	"	"	"
(주)천일금속	서울성동구 마장동766-19	KSB 2331	수도꼭지	2급가로형 밸브	"	"	"
신일공업사	서울구로구 독산동302-10	"	"	2급수도용 앵글밸브	판매정지	"	"
영남금속 공업사	서울영등포구문 래5가19-13	"	"	2급관살이 앵글밸브	"	"	"
(주)서울합금	서울구로구독산 동1003-15	KSC 2508	수지인캡남	RS 45 1.2-1.6A RS 50 1.2-1.6A	표시정지	84. 10.5	85. 1.5

◎서울특별시공고제 77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
 업소를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4.12.21.
 서울특별시장

특정업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					
지정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16	일신설비	능동 91-8	임만순	기술요원미채용	시공정지 2개월
167	부흥설비	능동 84-37	정정웅	"	"
56	세한설비사	군자동 149-8	김명근	면적미달	"

○ 기타문의사항 : 성동구청 산업과 (445-0700)

◎ 서울특별시공고제 772 호

서울특별시관내일부지역주차전용 건축물건축물지정공고

건축법 제 39 조 제 2 항 및 동시 행정 제 84 조 제 1 항 규정에 의거 도심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4.12.22
서울특별시장

1. 대 상 지 역
서울특별시 4대문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다만, 학교 이적지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심지 학교 이적지 건축제한에 의하고 도시설계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설계 내용에 의함.

2. 지정건축물

구 분	지 정 건 축 물	비 고
주차전용건축물 (하나의 대지안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이 주차장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한다)	10분의 7, 방화지구내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에서는 10분의 9)	○ 완화조건 ·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변경 금지 · 주차대기로 인한 교통체증 방지 대책 수립 · 건축위원회 심의

◎ 서울특별시공고제 773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 제 6 조 (제 13 조) 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84 년 인가 제 1, 2, 6, 8, 11, 12, 14, 18, 19, 20, 22, 23, 27, 28 호 및 83 년 26 호로 설치 인가된 공공 하수도 설치 (변경, 폐지) 가 완료 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토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84.12.21

서울특별시장

공고 및 공람개요

1. 사용개시년월일 : 1985.1.5
2. 배수구역 : 하수관망도 참조
3.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 서대문구 관내일원 지역 (하수관망도 참조)
4.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 분류식의 구분 : 분류식 및 합류식
5. 하수관망도 비치장소 : 서대문구청 토목과
6. 공람기간 : '84.12.21 ~ '85.1.4

구 청 공 고

◎ 영등포구공고제 70 호

징계혐의자출석요구

1. 공무원징계령 제 20 조 6 항 및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 4 조 6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징계혐의자 인척사항
 - 소 속 : 영등포구양평 1 동
 - 직 명 :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 이 원 필
 - 생년월일 : 1950.1.20
 - 주 소 : 서울영등포구신길동 415-1
2. 다음과 같이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회를 개최하니 인사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진술을 원할때는 사전에 통보하여 주고,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고자 할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때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할것.

1984.12.20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 원 장

- 가.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개최
- 1) 일시 : '85.1.16 10:00
 - 2) 장소 : 충무국장실
 - 3) 안건 : 이원필에 대한 징계외결

사 령

◎ 1984년 12월 17일자

령제 470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노 종 식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4.9.20자 감봉 3월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함	청소과위생시설계장	지방화공기좌

◎ 1984년 12월 17일자

령제 471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박 용 덕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대문구보검소	지방의무기점

◎ 1984년 12월 18일자

령제 472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최 덕 준	부직을 병함	내부국 문화과	지방행정 주사보

◎ 1984년 12월 20일자

령제 473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홍 승 용	지방별정직 7급상당(기계처리사)에 임함 전자계산소 근무를 병함	전자계산소	지방별정직 8급상당

성 명		발 령 부 서	호 봉	직	급
◎ 1984 년 12 월 20 일자 령제 474 호					
이 선 회	경찰국	년허과	3 호봉	지방별정직 9 급상당 (천공원)	
라 현 숙	"	"	"	"	"
서 태 신	"	"	2 호봉	"	"
◎ 1984 년 12 월 28 일자 령제 47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석 례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보건환경연구소 근무를 명함	충남보건연구소	지방보건연구사	
◎ 1984 년 12 월 21 일자 제 47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근 영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성북구 총무과	행정 주사	
김 진 화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성동구 산업과	행정서기	
◎ 1984 년 12 월 24 일자 령제 478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전 동 건	북구수도관리사업소		종로구	지방토목기사	
조 수 장	종로구		북구수도관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	